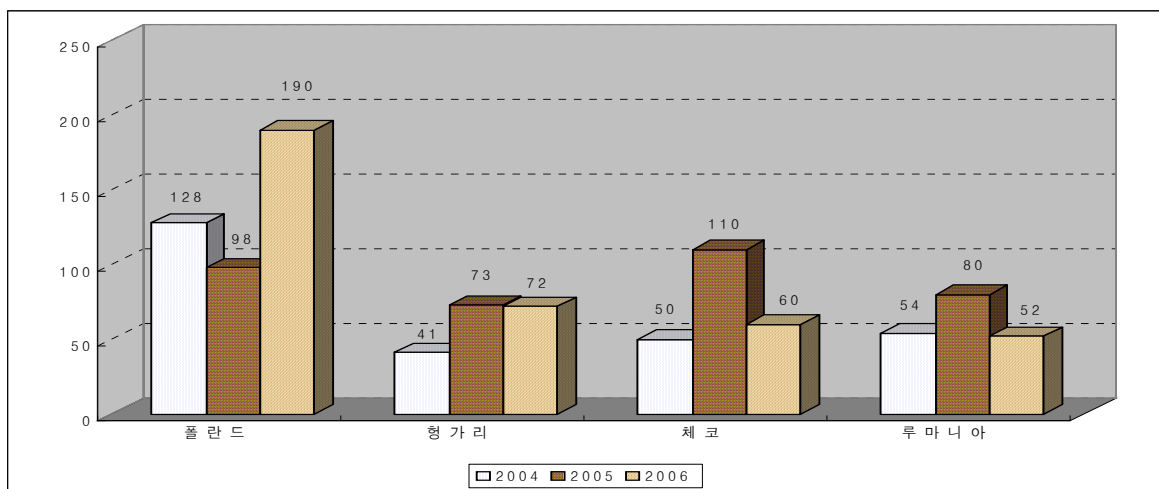


헝가리,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그림> 동유럽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등.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주로 민영화 추진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결과, 민영화보다는 재투자, 미개발지역(green field) 및 후속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헝가리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입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내수경기 부진으로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FDI 유입이 2004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이는 실물경기 호전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인책(Smart Hungary Plan)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1990-2004년 외국인투자기업은 624개의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독일 2,920억 Ft(125건), 미국 1,660억 Ft(51건), 프랑스 1,030억 Ft(54건), 오스트리

아 640억 Ft(151건), 벨기에 530억 Ft(15건), 네덜란드 440억 Ft(23건) 등 총 1조 2천억 Ft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서부유럽 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헝가리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고 헝가리 현지기업들도 유럽 대륙 내 또는 글로벌 제품공급 체인(supply chain)으로 통합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음.
 - EU 회원국의 유로화 가치상승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제조공장 건설 등 지분투자, 재투자 및 기업간 용자형태의 투자가 대부분임.
 - 2005년 중에는 영국 BAA의 Budapest Airport에 대한 75년간 운영권 매입에 18.3억 유로(23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 이외에도 유럽 중소규모 업체들의 점진적인 투자와 유럽 이외 지역에서 서부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편의상 영업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사례도 있음.
- 2006년 말 FDI 유입 누적기준으로 주요 투자국가는 독일(30%), 네덜란드(18%), 오스트리아(11%) 등이며, EU가 FDI 유입실적의 79%를 차지함.
 - 산업별 FDI 유입실적 분류(헝가리 투자무역개발청(ITD) 2006년 기준)
 - 서비스: 49%(무역 10.1%, 교통·통신 9.9%, 금융 10.5%, 영업서비스 16.8%)
 - 제조업: 44%(식품 5.2%, 화학 5.7%, 전자 8.8%, 자동차 10.9%)
 - 에너지 및 용수공급: 4%
- 2007년 FDI 순유입액은 2분기 이전 헝가리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조세납부 부담 등으로 투자유인이 축소되었다가 3분기 이후 헝가리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흑자(14억 유로)로 전환됨.
- 2007년 1-9월 FDI 유입금액은 18.3억 유로로 추정되며, 2007년 9월 말 FDI 유입누적액(체제전환 이후)은 668억 유로로 1인당 FDI 유입금액은 6,638유로로 중부유럽 최고 수준임.
 - FDI 투자기업 가운데 전자제품, 자동차 및 기계류 종합 생산업체인 Payer(오스트리아)가 35억 Forint를 투자하여 Ajka 지역의 기존공장 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며, 한국타이어는 5억 유로를 투자하여 2007년 6월 Dunaujvaros 지역의 현지공장을 가동하여 2010년까지 생산능력을 1,50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임을 발표함.

2. 외국인투자 정책

(1) 정책 개요

- 체제전환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외환거래를 독점하였으나, 1991년 외국인투자 신고제 전환, 1992년 7월 상업은행간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상업은행도 개인·기업에 대한 외환매입이 가능함.
- 외환당국은 경상거래에 대한 Forint의 완전 태환제 실시, 자본거래 일부 자유화, 중앙은행의 외환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법을 제정(1996.1월 발효)하여 헝가리 기업의 해외차입 허용,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 외국인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보유허용 등의 조치를 시행함.
- 헝가리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01년 6월 중앙은행 명령을 공포하여 6월 15일부터 모든 외환거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기존 규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적 외환규제가 폐지됨.
- 헝가리 정부는 2004년 1월 이후 투자 효과 및 지역을 고려하여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함.
- 헝가리는 EU 가입 이후 신규 투자에 대한 투자 혜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EU 기준에 의해 부분적인 투자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EU 가입 이전에 보장된 투자 인센티브는 승인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됨.
- 100억 Forint 이상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기업 및 30억 Forint 이상의 낙후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을 가동한 경우 고용유발 효과를 전제로 최대 10년간 조세면제 혜택을 부여함.
- 납세연도 3년간 고용인원(최초 취업자 기준) 300명(낙후지역 150명) 이상 증가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세율 80%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시설매입(건설)을 위한 신용대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연도 대출금의 40%(연간 600만 Forint 한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

- 헝가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별도의 투자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투자 의향서 작성 및 공증(소요시간 3일), 통계청 등록(2일), 세무 등록(납세번호 수령, 2일), 은행계좌 개설(1일), 법원 등기(1개월) 등의 절차를 취함.

(2)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계 우대조치 등의 다양한 우대조치, EU 기금 등 정부보조금은 헝가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됨.
- 2004년 EU 가입 이후 법인세 감면기간 폐지 등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혜택은 더 이상 부여되지 않음(EU 규정에 따라 일부 인센티브 허용)
- 일반적으로는 IT, 금융서비스, 기술 R&D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헝가리 정부로부터 최대 1억 Forint 한도내 투자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하고, 생산능력 제고 및 혁신 부문 투자에 대해 2,500만-1억 5천만 Forint 범위내 투자비용의 50% 지원 가능함.
- 산업별 우대조치는 EU 기준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으나, 첨단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등에 관한 R&D에 대해서는 투입비용의 30% 이내에서 최대 3천만 Forint 한도내 지원 가능하며 10억 포린트 초과 R&D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법인세율의 80%를 감면함.
-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1월부터 10억 Forint 이상의 생산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율의 80%를 감면해 주며, 헝가리 정부와 EU의 지역개발활동프로그램(ROP) 및 인적자원 활동프로그램(HEFOP)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3) 조세제도 개관

<표>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세율수준 비교
(2008년 기준)

(단위: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소득세				
법인세율	19	16	21	16
개인소득세율	19, 30, 40	18, 36	15	16
부가가치세율	22	20	19	19

자료: EIU, Country Commerce 2007.

- 헝가리 세제당국은 2006년 7월 긴급재정조치(법인세법 2006)의 일환으로 평균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세목에 따라 2006년 9월 또는 2007년 1월부터 발효됨. 2007년 1월부터 시행한 기본 법인세율은 16%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500만 Forint에 대해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외국기업은 과세표준을 작성하기 위해 복식부기 규정을 근거로 연간 매출액 과 비용에 대한 계산근거가 작성되어야 함. 또한, 외국기업은 헝가리 내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특정수익을 실현한 데 대한 과세는 “과세 규칙에 관한 법”(92/2003)의 규정을 적용 받음.
-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간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18%(최초 170만 Forint에 대해 적용), 36%(2006년 1월 이후 38%에서 하향조정) 이상의 2단계로 차등 부과됨.
- 헝가리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 부터 배당받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이후 기존의 20% 원천과세율을 면제하며, 개인거주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25% 또는 35%를 원천 과세함.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EU 회원국의 모기업 송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당해 모기업의 헝가리 현지법인 지분 비율이 25% 이상이고 최소 2년간 지분참여 사실이 있는 경우 배당 과세는 면제됨.
- 부가가치세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EU 회원국 내에서는 상품 판매자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부과됨.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20% 수준이나, 5%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 및 용역도 있음.

○ 5% 부가가치세율 적용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및 제품, 식료품

- 특별소비세는 2006년 1월 부가가치세율 인하(25%→20%)를 보전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주류 및 담배제품을 중심으로 인상됨. 예를 들면, 담배 1,000 개피 기준으로 2006년 1월 6,880Ft에서 2006년 9월 7,240Ft, 2007년 4월 7,420Ft, 2007년 9월 7,600Ft로 인상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